

**- 2023년도 제9회(재공고) -**  
**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**

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6일  
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**1. 근거법령**
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9108호, 2022. 12. 27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3531호, 2023. 6. 13.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, 2023. 6. 13.)
-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(부산광역시 규칙 제4130호, 2023. 9. 27.)

**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> 2개 분야 2명**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임용등급	인원
문화시설 영어 통·번역	문화시설개관준비과	시간선택제임기제 '다'급 (주 20시간)	1명
해양정수 방사성 물질 검사연구 (방사성물질 및 미량 유해물질(마약류) 분석)	상수도사업본부 (수질연구소)	공업 8급(화공) (일반임기제)	1명

※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, 5년 이내 연장 가능(사업 계속 시)

### 3. 임용의 필요성

임용분야	필요성
문화시설 영어 통·번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아트센터와 오페라하우스 개관 준비를 위한 공연기획 본격 추진</li> <li>○ 부산시립공연장 운영 조례에 따른 예술감독 및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능통자 필요</li> </ul>
해양정수 방사성 물질 검사연구 (방사성물질 및 미량 유해물질(마약류) 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먹는 물 중의 라돈 등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업무 확대</li> <li>○ 우리 시 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필요</li> <li>○ 새롭게 등장하는 상수원 중의 방사성 물질과 다량의 미량유해물질(마약류)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실무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필요</li> </ul>

### 4. 임용분야 주요업무

임용분야	주요업무
문화시설 영어 통·번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관 및 시즌 공연 구성을 위한 해외 프로그래머·해외 자문가 지원 및 통·번역</li> <li>○ 해외극장, 예술단체, 예술가 등 교류 협력사업 추진</li> <li>○ 해외 공연, 아티스트 관련 자료 수집 및 각종 외국어 서한·홍보물 등 작성·번역</li> <li>○ 기획·제작 공연을 위한 해외 아티스트 인력풀 데이터베이스 구축</li> <li>○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아트센터·오페라하우스 콘텐츠 발굴</li> </ul>
해양정수 방사성 물질 검사연구 (방사성물질 및 미량 유해물질(마약류) 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·정수 및 해수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</li> <li>○ 상수원수 및 정수에 존재하는 마약류 물질 검사</li> <li>○ 상수원의 방사성 물질 및 미량유해물질(마약류) 검출기법 최적화</li> <li>○ 정수처리공정 단계별 방사성 물질 및 미량유해물질(마약류) 제거방안 연구</li> </ul>

## 5. 응시 자격

### 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
#### <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\*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☞ 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분야별 자격요건 (기준일 :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 예정일)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격요건
<p><b>문화시설 영어 통번역</b></p>	<p>시간선택제 임기제 '다급' (주 20시간)</p>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▶ 경력인정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,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 시설, 국공립예술단 또는 전문예술단체(법인)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li> </ul> <hr/> <p>▶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연예술·음악 관련 학과 전공자</li> <li>-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 가능자</li> </ul>
<p><b>해양정수 방사성 물질 검사연구</b> (방사성물질 및 미량유해물질 (마약류) 분석)</p>	<p>공업8급(화공) (일반임기제)</p>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▶ 경력인정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 업무(방사성물질 및 미량유해물질(마약류) 분석)와 관련성이 인정 되는 경력</li> </ul> <hr/> <p>▶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공학, 환경분석학, 원자력(핵)공학, 방사선학, 물리학 등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자</li> </ul>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)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)

## 6.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경력·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(서면 심사)

※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,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

심사항목 배점기준	일반 전형요소			전문분야별 전형요소				
	소계	자 기 소개서	직 무 계 획서	소계	관련분야 근무경력	직무분야 전공관련	직무관련 자격증 능력도	직무관련 연구개발 성과물
100	30	15	15	70	30	15	15	10

###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
- 평정요소 및 평가방식
  -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 - 평가방식 : 5개 평정 요소마다 상, 중, 하로 평가
- 합격자 결정
  -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으로 함
  - 불합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임용 인원수만큼 합격자로 결정

## 7. 보수 수준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5급(상당)	-	63,752천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6급(상당)	79,257천원	52,811천원	
7급(상당)	64,776천원	46,006천원	
8급(상당)	56,827천원	40,537천원	
9급(상당)	50,039천원	-	

※ 상기 보수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액임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8. 시험 일정(예정)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23. 10. 16.(월)	'23. 11. 1.(수) ~ 11. 3.(금)	서류전형	'23. 11. 8.(수) ~ 11. 9.(목)	부산광역시청	'23. 11. 13.(월) ※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(시험일시, 장소 등)
		면접시험	'23. 11. 21.(화) ~ 11. 23.(목)	부산광역시청	'23. 12. 6.(수)

※ 시험일, 면접 장소,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## 9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시 홈페이지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처 : 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(시청 10층)

다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접수시간은 09:00~18:00(점심시간 제외)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

-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
(우 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
- 우편 접수 시는 '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'와 '반신용 봉투'를 함께 우송하며,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'등기용 우표 부착'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## 10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

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- ▶ 응시수수료 : 5급(가급) 10,000원, 6~7급(나~다급) 7,000원, 8~9급(라~마급) 5,000원
  -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(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구입) 날인
  - 우편 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'우체국 통상환증서'로 대체

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-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**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**

- ④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-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-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  - ▶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-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▶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 - ▶ 필요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  -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
  - ※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
  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  - ▶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
-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 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 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
  - ※ 비상근 근무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 급여 임금명세서, 보수내역,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 은행 거래(입금)내역서 등 자료 추가 제출
- 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-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- ⑪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

## 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
  - ▶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② 각종 대회 수상·상훈 등 증빙자료

- ③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등
  - ▶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(자유서식)하고 논문 표지·발표자·목차가 표시된 페이지 및 서론 사본 제출
  - ▶ 성과물(업무실적 등)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5점 이내로 한정
- ④ 지원 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(A4 3매 이내)
- ⑤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 <별지 제8호 서식>
  - ▶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

#### 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 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※ 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
-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※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11. 기타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
-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-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
※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 
① 경력기간 ⇒ ② 자격증 유무 및 점수 순 ⇒ ③ 성과물 유무
-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시 홈페이지(busan.go.kr)에 게시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
  - 응시 관련 :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(051-888-1975)
  - 직무 관련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연락처
문화시설 영어 통·번역	문화시설개관준비과	051-888-5722
해양정수 방사성물질 검사연구 (방사성 물질 및 미량유해물질(마약류) 분석)	상수도사업본부 (수질연구소)	051-669-4223

- 붙임 1. 직무기술서 1부.  
2.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. 끝.